

공 고 제 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년 월 일

읍·면·동 장 인

세대주성명	성 생 년 월 명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